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의 안 번 호 17

제출년월일: 2018. 8.24.

제 출 자: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및「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라.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운영 사항 (안 제20조)
- 마. 동물복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사.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아. 반려견 놀이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부서의견 수렴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7. 5. ~ 2018. 7. 25.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의뢰 결과 권고사항 반영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 제한 규정을 추가

4) 성별영향분석 : 여성보육과 의뢰 결과 권고사항 불수용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 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 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4.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동물의 학대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 3.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등 교육·홍보
 - 4.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 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정
-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주관부서 과장
-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 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유리위원회 위원
-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회에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고, 운영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 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 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소유자
- 2. 소유자의 주소
- 3. 소유자의 전화번호
-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물등록증
-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

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반기마다 동물보호 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 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 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 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 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 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 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 제18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 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 ③ 구청장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 ⑤ 소유자가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8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사용된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된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그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할 수 있다.
- 제2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통해 공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 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따로 정한다.
-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 2.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
- 제2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 등과 관련된 지도·계몽활동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 1.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2.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④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⑤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은 서초구청장 또는 서초구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초구청장 또는 서초구청장과 서초구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초구청장 또는 서초구청장과 서초구 동물 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 가.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단, 시장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초구청장과 서초구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